

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30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관련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
-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위탁운영)
-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(의회 동의 등)

○ 추진 필요성

-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「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」 중 등록자 관리, 고혈압·당뇨병 예방관리 교육, 환자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국가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위탁사무 내용

○ 위탁자 : 하남시청

○ 수탁자 :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(단체)

○ 위탁내용

-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연계·등록 촉진
- 고혈압·당뇨병 등록자 관리(문자, 자동응답안내, 직접전화)
- 고혈압·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

- 지역사회 고혈압·당뇨병 환자 관리 및 예방 교육 실시
-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(지역 캠페인)
-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건강검진(키, 체중, 혈압, 혈당)
-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보고 및 평가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

4. 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
- 인력현황 : 7명(센터장 1명, 팀장 1명, 간호사 2명, 영양사 2명, 행정요원 1명)
- 소 재 지 :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, 2층
- 규 모 : 130.6m²(지상2층)
- 지원시설 : 사무실, 상설교육장, 상담실, 주차장 등

5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6. 선정방식

-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선정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59,16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※ 2026년 예산 기준,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시에 따라 후년도 위탁예산 변경 가능

-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인건비	운영비	행정지원비	비 고
소요예산	359,160	251,497	100,480	7,183	
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
- 고혈압·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심근경색,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건강위험 요인으로,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라 환자 수와 진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- ※ 고혈압·당뇨병 단일 상병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사용 1,2위(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2024, 국민건강통계2024),
 - 고혈압 유병율 20.1%(2014년) → 22.2%(2024년), 진료비 2.4조원(2002년) → 4.5조원(2024년)
 - 당뇨병 유병율 9.3%(2014년) → 10.6%(2024년), 진료비 1.6조원(2002년) → 3.2조원(2024년)
- 특히 고혈압 및 당뇨병은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,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·교육·상담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중증화 방지가 중요함
- 지역사회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치료를 향상 및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여,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, 환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,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됨
-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

9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 발췌서 1부(붙임1)
-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1부(별첨)

1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

-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2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

제10조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
 2.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
 3.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·홍보
 4.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
 5.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4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·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위탁운영)

제6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
2. 제5조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
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5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(의회 동의 등)

제7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